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제120호

2020. 10.13.

건명	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(참여예산실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0. 10. 13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10. 13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 신설규정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
-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논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(안 제1조)
- 나.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 운용(안 제2조)
- 다.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함(안 제3조~제9조)
- 라. 기금의 관리·운용방법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을 정함(안 제10조~제12조)
- 마.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. 12. 31.까지로 정함(안 제16조)

- 바. 기금의 시행일은 2021. 1. 8.부터 시행함(안 부칙 제1조)
- 사.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는 폐지한다(안 부칙 제2조)
- 아. 「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조성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승계하는 부칙을 정함(안 부칙 제3조)

□ 검토의견

-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논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 및 제43조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제121호

2020. 10.13 .

건명	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참여예산실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0. 10.13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10.13.

보 고 내 용

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“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”에 따라 연구용역의 공정성·책임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객관적인 과제심의를 위한 외부 위촉위원 참여비율을 확대하고,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참여 상한 비율 설정(안 제7조)
- 과제선정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과 연구과제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을 심의에서 배제(안 제13조)
- 연구용역결과 공개를 통한 연구용역 중복 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고, 시민의 알권리 증진(안 제17조의2)

검토의견

- 연구 용역의 공정성·책임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함.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및 「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50조 및 54조 등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